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591	가맹본부	www.nolboo.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513	홈페이지 주소	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314	대표 이메일 주소	webmaster@nolboo.co.kr

정보공개서

(주)놀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놀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청담동 72-7) W타워 14,15층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02-547-9792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1577-687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721-976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놀부	탕수육본능 외 32개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청담동 72-7) W타워 14,15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0.01.03	1990.01.03	김용위	1577-6877	02-547-9792
	법인등록번호	110111-0667167		사업자등록번호	112-81-2205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용위/(주)놀부	탕수육본능 외 32개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청담동 72-7) W타워 14,15층		
기타비상무이사	박미희/(주)놀부				
기타비상무이사	신우철/(주)놀부				
감사	이현호/(주)놀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용위	1577-6877	02-547-979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설명
명 칭	탕수육본능	
가맹점 상호	탕수육본능 OO점	
상표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01638877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3]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6,452,093	25,843,452	608,641	40,387,794	-2,849,892	-5,150,649
2022년	20,368,169	6,450,625	13,917,544	33,597,630	-1,660,404	1,278,164
2023년	36,775,522	17,253,885	19,521,637	67,467,822	1,133,999	986,754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취하당, 놀부알찬간장게장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브랜드로 기타가맹점에 포함하였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외, 유통사업도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사업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식자재매출액과 유통사업 매출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현직위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대표이사	김용위	2024.08~현재	(주)놀부 대표이사	(주)놀부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감사	이현호	2024.02~현재	감사	감사업무 총괄
	기타 비상무이사	박미희	2023.09~현재	(주)놀부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신우철	2024.07~현재	(주)놀부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3	12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놀부	가맹사업경영	1989.4~현재	놀부보쌈족발(등록번호:2008010004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1992.2~현재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등록번호:20080100048)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04.10~현재	놀부항아리갈비(등록번호:2008010005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1999.12~현재	놀부유황오리진흙구이(등록번호:20100100014)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1.04~2021.10	차롱반점(등록번호:20210221)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2012.12~현재	놀부맑은설렁탕담다 (등록번호:20130100042)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3.03~현재	놀부숯불애장닭(등록번호:2012010069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3.12~현재	놀부 화덕족발 (등록번호:20130395)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4.09~2018.04	n TABLE (등록번호:20140832)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4.12~현재	벨라빈스커피(등록번호:201150025)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2015.05~현재	공수간(등록번호:20120100526)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2015.05~현재	놀부옛날통닭(등록번호:20150519)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2015.04~2020.11	레드머그커피(등록번호:20150808)이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2017.09~현재	놀부반상(등록번호:20171056)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7.09~현재	만면희색(등록번호:2017105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8.07~2019.04	지금 출발했어요(등록번호:20180709)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8.07~2019.04	플라잉 바베(등록번호: 2018071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8.07~현재	방콕포차(등록번호:20180706)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8.08~현재	삼겹본능(등록번호:20180922)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8.08~현재	호반식(등록번호:2018100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9.02~현재	흥부찜닭(등록번호:20190202)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9.09~현재	놀부김치찜(등록번호:20190926)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9.11~현재	창대한곱창(등록번호:2019114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19.11~현재	타이거마라(등록번호:2019114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0.05~현재	돈까스본능(등록번호:20200589)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2020.05~현재	치킨본능(등록번호:20200590)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2020.05~현재	탕수육본능(등록번호:20200591)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2020.07~현재	놀부오불장군(등록번호:20200891)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1.04~현재	료리집북향(등록번호:20210219)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1.01~현재	놀부감자탕(등록번호:2021063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1.01~현재	오리본능(등록번호:2021022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1.01~현재	놀부해물찜(등록번호:20210626)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1.01~현재	도교주방(등록번호:20210625)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2021.01~현재	라라그릴(등록번호:20210624)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2021.01~현재	럭키경양식(등록번호:20210628)이라는 영업표지의 양식사업 경영
		2021.01~현재	베리굿피자(등록번호:20210627)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2021.01~현재	샌드위치몬스터(등록번호:20210623)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2021.10~현재	아임유얼파스타(등록번호 20213474)이라는 영업표지의 양식사업 경영

nTable, 지금출발했어요, 플라잉바베, 레드머그커피, 차롱반점 브랜드는 현재 정보공개서 사진 취소로 해당 브랜드 가맹사업을 더 이상 경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서비스표	2020.09.01 등록	등록 4016388770000	(주)놀부	2030.09.01

위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가 지정한 디자인, 사인물 등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출원 중으로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경우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탕수육본능 가맹사업 현황

1. 탕수육본능을 시작한 날: 2020년 07월13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0년 4월)

2. 탕수육본능 연혁

가맹본부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놀부	탕수육본능	안세진	2020년 4월 ~ 2021.11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30(도촌동) 놀부빌딩
(주)놀부	탕수육본능	조갑술	2021.11.8.~2022.8.24	
(주)놀부	탕수육본능	홍성만	2022.08.24.~2023.03.31	
(주)놀부	탕수육본능	오진원	2023.03.31 ~ 2024.02.0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청담동 72-7) W타워 14,15층
(주)놀부	탕수육본능	유성호	2023.10.25 ~ 2024.07.01	
(주)놀부	탕수육본능	한은수	2024.07.01.~2025.02.10	
(주)놀부	탕수육본능	김용위	2024.08.05.~현재	

3. 탕수육본능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식	탕수육, 짬뽕, 짜장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탕수육본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	2	5	-	-	-	-	-	-
서울	5	-	5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탕수육본능 가맹점 수

(단위: 개)

년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	4	6	-	1	2
2022	2	-	2	-	-	0
2023	-	-	-	-	-	-

*가맹점 無 해당사항 없음

6. 탕수육본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탕수육본능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no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수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1	놀부보쌈족발	20080100047	한식	152/4	134/3	103/1
2	놀부부대찌개	20080100048	한식	278/3	246/4	203/2
3	놀부항아리갈비	20080100050	한식	4/0	4/0	4/2
4	놀부유황오리진흙구이	20100100014	한식	2/2	1/2	1/1
5	진한설렁탕담다	20130100042	한식	3/0	3/0	3/0
6	놀부숯불애장닭	20120100698	한식	1/0	1/0	0/0
7	놀부화덕족발	20130395	한식	5/0	4/0	4/0
8	벨라빈스커피	20150025	커피	4/0	4/0	4/0
9	공수간	20120100526	분식	101/6	43/1	25/0
10	놀부옛날통닭	20150519	치킨	24/1	13/0	6/0
11	만면희색	20171057	한식	0/0	0/0	0/0
12	방콕포차	20180706	한식	0/0	0/0	0/0
13	삼겹본능	20180922	한식	218/5	155/1	112/1
14	호반식	20181007	기타외식	5/0	4/0	1/0
15	흥부찜닭	20190202	한식	92/5	40/0	30/0
16	놀부김치찜	20190926	한식	72/5	63/4	44/2
17	창대한곱창	20191147	한식	0/1	0/0	0/0
18	타이거마라	20191148	기타외식	0/0	0/0	0/0
19	돈까스본능	20200589	서양식	3/5	1/1	0/0
20	탕수육본능	20200591	중식	2/3	0/0	0/0
21	놀부오불장군	20200891	한식	2/0	1/0	1/0
22	오리본능	20210220	한식	2/4	0/0	0/0
23	아임유얼파스타	20213474	양식	0/3	0/0	0/0
24	놀부반상	20170156	한식	0/0	0/0	0/0
25	치킨본능	20200590	치킨	0/0	0/0	0/0
26	료리집북향	20210219	한식	0/0	0/0	0/0
27	놀부감자탕	20210630	한식	0/0	0/0	0/0
28	놀부해물찜	20210626	한식	0/0	0/0	0/0
29	도쿄주방	20210625	일식	0/0	0/0	0/0
30	라라그릴	20210624	한식	0/0	0/0	0/0
31	럭키경양식	20210628	양식	0/0	0/0	0/0
32	샌드위치몬스터	20210623	기타외식	0/0	0/0	0/0
33	베리굿피자	20210627	피자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탕수육본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가 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산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가맹점 無 해당사항 없음

* 6개월 미만 매출액산정에서 제외, 지역별 5개 미만 시 매출액 표기 제외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0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분석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0% 인 것으로 보
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물품 공급매출이 발생한 전체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수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단, 2023년 영업을 6개월 이상하지 않은 점포의 경우 1년치 환산 전체 연간 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
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탕수육본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탕수육본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0

* 가맹점 無 해당사항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탕수육본능 가맹점 관리를 본사 ((주)놀부) 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는 [2019년 1월 1일 부]에 **광고 · 판촉** 관련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놀부에서의 2023년 광고비 및 판촉비 집행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2023년 광고선전비		기간	지출비용	비고
광고 (마케팅)	o2o	*연중상시 *o2o매월지원	(비공개)	요기요, 배달의민족 관련 지원비용
	홍보물		(비공개)	홍보관련 물품 및 소모품 구입
	기타(구입)		(비공개)	물품 및 기기 구입
	티맵광고		(비공개)	O2O 프로모션 홍보비용
	당근마켓		(비공개)	
	인스타그램		(비공개)	
	블로그		(비공개)	
	홈페이지		(비공개)	
	브랜드광고		(비공개)	
	온라인상품권		(비공개)	
	언론		(비공개)	
	홍보문자		(비공개)	
광고 (마케팅) 소계			69,949	
판촉 (가맹)	LSP지원	*연중상시 *O2O 매월 지원 *LSP매월지원	(비공개)	점포별 프로모션 지원
	O2O		(비공개)	요기요, 배달의민족 o2o 지원
	클레임		(비공개)	

기타	(비공개)	
판촉 (가맹)	337,950	
광고 (마케팅) + 판촉 (가맹) 총계	407,898	

* 가맹점 無. 가맹사업 진행 예정 브랜드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므로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놀부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과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예치가맹금)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시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은 보험사 문의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	-	-	-	-	-	-

* 해당사항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	-	-	-	-	-

* 해당사항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탕수육본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	-	-	-	-
최초 가맹비	550	계약 체결 시	시설공사 전 임대차 문제,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급	-시설공사 개시 후 -개점 전 교육비 : 교육개시 후	교육시작 이전에 반환가능
개점전 교육비	1,1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일반형)	금액 (배달형)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총계	1,000	-	-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에 채무존재 시 상계 후 반환	가맹본부에 채무존재 시 상계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650
초도가맹금	550
개점 전 교육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다음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달형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33㎡)

구분	지급대상	금액 (10평)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총계	-	30,907	3,091	-	-
인테리어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18,150	1,815	가맹 계약 시 개별 계약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1,392	-		
주방기기	협력업체	9,275	-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집기, 자재	가맹본부, 점주자체구매 등	1,320	132		
원부자재, 초도물품	가맹본부	770	-		

* 점포의 규모, 현장여건, 공사상황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 등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귀하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매뉴얼을 제공받아야 하며, 매뉴얼 제공 대가로 [신규점] 3.3㎡당 165천원 / [업종변경] 3.3㎡당 110천원 / [(주)놀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경우] 1,100천원(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매뉴얼 미 준수 시, 매뉴얼 기준에 따른 시정항목에 대한 재공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별도공사 : 외부공사, 소방방염시설공사, 전기증설공사, 철거공사, 화장실공사, 덕트외 부입상공사, 가스공사, 후드제작, 방수공사 등
- ▶ 자체구입품목 : 냉난방기, 전자제품 일부 등
- ▶ 건물 구조 및 가맹점사업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별도 공사에 대한 예상비용은 공사 진행 시 진행업체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 ▶ 위 금액은 점포개설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제시된 금액은 점포구조 및 공사기간, 물가 변동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준비기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이자 비용은 없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 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며,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주)놀부는 점포선정에 대한 상권분석 및 입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가맹점입지를 선정하고 판단하는 최종 주체 및 책임자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희망자)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영업)이 가능한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주)놀부의 직영점 및 (주)놀부의 타 가맹점 직원을 자신의 점포에 근무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가능 자율채용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탕수육본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부과일자)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주)놀부	월 165	1일			
광고 분담금	(주)놀부	-	-	-	-	필요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 합의하에 광고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등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착공 전 : 공사금액의 50% - 공사완료 시 : 공사금액의 50%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등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착공 시 : 공사금액의 40% - 공사완료중간 : 공사금액의 40% - 공사완료시 : 공사금액의 20%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주방설비	협력업체 등	수시	- 착공 전 : 공사금액의 50% - 공사완료 시 : 공사금액의 50%	-	-	노후 설비기기 교체비용
지연이자	(주)놀부	연 15%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	-	금전지급 의무 이행 지체 시
※ 시설 및 집기자재 노후화 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되며, 점포 내부면적, 전면 길이, 점포현황 등에 의해 비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 無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
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
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중 4)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의 내용과 같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하기 3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계약해지로 처리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가맹사업 양도에 동의하여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신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대체수단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영위하는데 있어 객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계약해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계약해지로 처리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탕수육본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놀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맹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교육비·시장조사비·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도 가맹금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2)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는 "상호, 상표 등"과 (주)놀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기타 (주)놀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일체의 상징이나 표시물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전시 또는 게시된 간판, 로고 기타 (주)놀부를 표창하는 표시가 포함된 일체의 저작물, 메뉴판, 와이드칼라, 메뉴판넬, 기업판넬, 인터넷상의 표시, 114안내 등을 즉시 제거 및 해지한 후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대여장비의 반환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사 혹은 협력업체로부터 대여 받은 장비일체는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본연의 기능을 일부 혹은 전부 상실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탕수육본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첨부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탕수육본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오리지널 찹쌀탕수육 소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이외에 전가맹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오리지널 찹쌀탕수육 중			

오리지널 찹쌀탕수육 대			
매운 찹쌀탕수육 소			
매운 찹쌀탕수육 중			
매운 찹쌀탕수육 대			
반반 찹쌀탕수육 소			
반반 찹쌀탕수육 중			
반반 찹쌀탕수육 대			
강정 찹쌀탕수육 소			
강정 찹쌀탕수육 중			
강정 찹쌀탕수육 대			
김치피자 찹쌀탕수육 소	(가맹본사에서는 매출향상 등을 타당한 이유를 위하여 사전협조 후에 메뉴의 추가 및 철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회 위반 :1 차 서면 시정 요구	경우에도 동일규정 적용
김치피자 찹쌀탕수육 중			
김치피자 찹쌀탕수육 대		3 회 위반 :2 차 서면 시정 요구	
꺄바로우 소		미 이행시 :계약 해지 가능	
꺄바로우 중			
꺄바로우 대			
찹쌀탕수육국물떡볶이세트 소			
찹쌀탕수육국물떡볶이세트 중			
찹쌀탕수육국물떡볶이세트 대			
바삭군만두(6 개)			
통오징어튀김			
통새우튀김(12 개)			
국물떡볶이			

가맹점사업자는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은 (주)놀부의 상표권 및 (주)놀부 시스템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가맹본부의 동의하에 상품을 추가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제3자 또는 다른 가맹점	원재료 및 공산품 일체	(주)놀부의 노하우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위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1차 서면 시정 요구 3회 위반: 2차 서면 시정 요구 미 이행시: 계약 해지 가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가격통보방법	비고
오리지널찰쌀탕수육소	18,000	개별 공문발송 또는 POS 공지	2021 년 12 월 기준
오리지널찰쌀탕수육중	24,000		
오리지널찰쌀탕수육대	30,000		
매운찰쌀탕수육소	18,000		
매운찰쌀탕수육중	24,000		
매운찰쌀탕수육대	30,000		
반반찰쌀탕수육소	19,000		
반반찰쌀탕수육중	25,000		
반반찰쌀탕수육대	31,000		
강정찰쌀탕수육소	18,000		
강정찰쌀탕수육중	24,000		
강정찰쌀탕수육대	30,000		
김치피자찰쌀탕수육소	20,000		
김치피자찰쌀탕수육중	26,000		
김치피자찰쌀탕수육대	32,000		

꿔바로우소	16,000		
꿔바로우중	22,000		
꿔바로우대	28,000		
참쌀탕수육국물떡볶이세트소	21,000		
참쌀탕수육국물떡볶이세트중	27,000		
참쌀탕수육국물떡볶이세트대	33,000		
바삭군만두(6 개)	3,000		
통오징어튀김	7,000		
통새우튀김(12 개)	8,000		
국물떡볶이	4,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유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탕수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탕수육본능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50m	별지에 영업 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상권 내 특수상권(병원, 대학교, 쇼핑몰, 푸드코트, 대형마트, 리조트, 백화점, 아울렛, 아케이드, 휴게소, 역사, 버스터미널 등)은 출점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 지역을 확정한 경우에는 상위 항목의 설정기준은 적용받지 않는다.	별지에 영업 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위 설정기준은 상권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계약 전 본사와 협의를 통해 설정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意的인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탕수육본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탕수육본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마트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유사한 이름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유사한 이름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당사는 영업 지역 내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데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탕수육본능은 2023년 가맹점 매출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 탕수육본능은 2023년 가맹점 매출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탕수육본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가맹계약에 의거 (제5장 제36조 ④) 재 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탕수육본능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제29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6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사업자가 법 제14조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초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귀하가 특수상권(대형마트, 백화점, 철도역사, 휴게소 등)에 입점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를 위하여 점포 소유자, 임대인, 기타 영업지역 또는 점포의 사용권한자와 임대차계약, 특약매입거래계약, 물품공급 계약 등 영업지역 또는 점포 이용과 관련된 계약(이하 "점포이용계약")을 당사 명의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점포이용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해당 영업지역 또는 점포에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상기 즉시 해지 사유 중 3번째 항목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적용을 받아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별도의 점포를 임대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가 파산하는 경우	37조 4항
○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가맹본부의 영업설비나 영업표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수정 및 보충 또는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8조 6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최초 계약 및 양도·양수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단, 양도인의 상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당사와 상권협의 후 상권을 조정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사유 발생시	모든 권리의무	사유발생 3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승인요청 -가맹본부의 승인	상속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 내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대리행사	본부 사전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사전승인 요청 -가맹본부의 승인	가맹점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업무위탁	해당 없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 동안 귀하가 탕수육본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 영업 지역에서 1년 동안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	불가능	가맹사업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이나 계산으로 가맹본부의 당해 브랜드와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기 간동안 매일 일당 10만원씩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 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탕수육본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3일 이상 가맹본부의 허락 없는 무단방치 금지	가맹본부와 협의 하에 변동가능 (위반 시 상품공급, 영업지원 중단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주방/홀 2명 (33㎡/10평 기준)	직접 근무 권유	영업이 가능한 인원	권장종업원수에 점주1명 포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부서
체크리스트	정기 방문 → 점포운영, 매뉴얼,接客, 서비스, 시설물 대상 → 전반적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작성 → 개선사항 경영주전달 → 개선 → 추후방문일정공유	수시	운영팀 등
QSC 점검	QSC 준수 여부 점검 → 교육 → 품질표준화 지도		
점포별 LSP ¹⁾	정기, 비정기(OM판단, 경영주요청, 경쟁점 발생 등)→ 지원시기 및 방법 협의 → 가맹점 별 LSP 진행 여부 검토		
고객의 소리	고객컴플레인 담당 OM 문자발송(칭찬/불만) → 발생 사유 확인 → 재발 방지 교육 → 고객 유선 통화 및 대응 사항 공유 → 해당 가맹점 지속 관리		
식재료 관리와 매뉴얼 준수여부, 고객응대 및 서비스, 적정 인원 구인 보충 지도, 필수 가입 보험서류 점검, 상권 준수 여부, 매출 장부 열람 등 포함			

당사가 진행하는 위의 모든 관리·감독은 가맹점을 일정수준(품질, 서비스, 위생 등)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시 가맹점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LSP의 경우 가맹점의 10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독자 광고 판촉 활동을 전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상표"등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승인을 가맹본부에게 득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 LSP : Local Store Promotion
(매장별 컨디션에 따라 진행되는 지역 혹은 매장 소규모의 판촉활동)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은 당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 및 판촉활동에 필요한 광고제작물, 로고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 협조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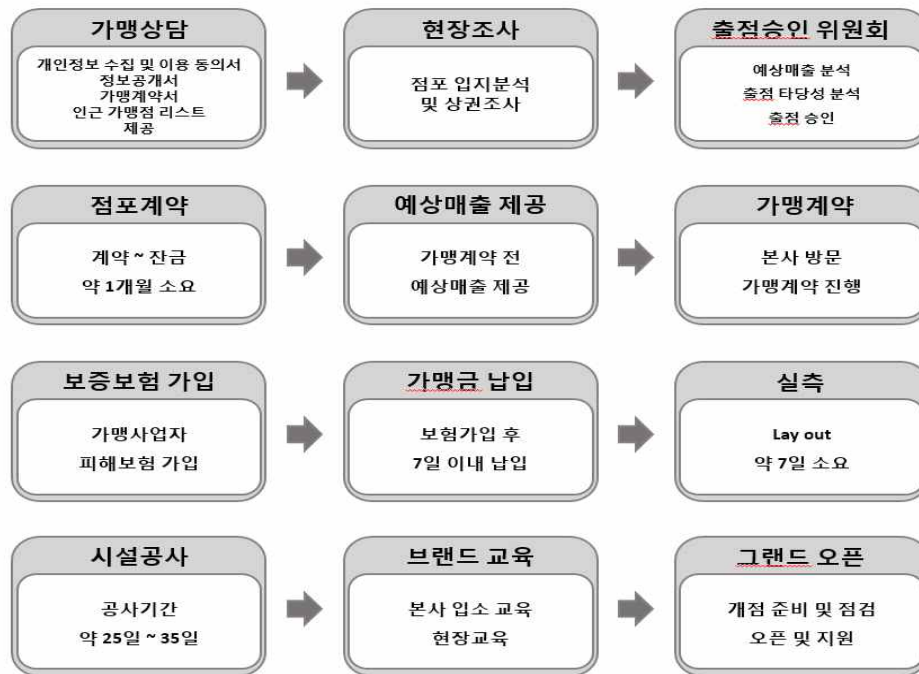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는 초기 가맹금을 당사에 납입하고 당사는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과 가맹사업자피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증서를 귀하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보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보험기관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기관의 약관에 따라 진행방식 및 내용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내에 「놀부자율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놀부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분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7.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의 4)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의 내용과 같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탕수육본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1) 교육 · 훈련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Grand Open 전	필수교육
보수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수시	필수교육

브랜드	교육내용
탕수육본능	1. 최초 가맹 시 기본 서비스 및 조리매뉴얼 교육 2. 가맹점사업자 대상으로 경영주 입문교육 3. 최초 가맹 시 현장(직영점) 입소 교육 4. 가맹점 사업자 대상 좌담회 또는 워크숍 실시 5. 가맹점 사업자 대상 유명인사 초청 강연 6. 가맹점 사업자 포함 가맹점 전 직원 대상 서비스 교육 (가맹점 휴무 후 입소) 7. 가맹점사업자 포함 가맹점 전 직원 대상 위생안전교육 8. 기타 상황에 맞춘 보수교육 및 비상소집 교육

2) 면적별 교육입소 및 권유근무 인원 수

면적	주방·홀		
	교육입소	권유근무인원	비고
33㎡ (10평)	2	2	최소 인력 기준 (협의 추가)

※ 경영주는 교육입소/권유근무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탕수육본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경영주 입문교육	4 일	1,100	초기 입문 교육
본사 매뉴얼 교육			
직영점 입소교육			
기타 보수교육	비정기적	사전 고지	비정기적, 필요시 실시
불만 재발 방지교육	1 일	사전 고지	

구 분	교육일	내 용	참석대상	비 고
경영주 입문교육	1 일	놀부기업소개, 점포관리노하우 물류배송시스템이해, 식품위생 세물관리방법, 인사노무관리이해	경영주	
본사 매뉴얼 교육	1 일	조리매뉴얼 이론 실습교육(1.5 일) 서비스교육 (0.5 일)	경영주, 점포직원	* 교육기간동안 발생하는 식비, 시식비는 전액 본사지원
직영점 입소교육	2 일	즉시 활용 가능한 살아있는 현장실습, 판매 메뉴 시식		* 직원 유니폼은 본사에서 발주 후 수령
기타 보수교육	비정기적	오픈 이후 비 정기적인 교육 (신메뉴교육, 보수교육 등)		* 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 직원(모든교육생) 은 보건증 준비 필수
불만재발 방지교육	1 일	서비스/조리 교육 : 불만 3 회 이상 접수 시		

교육에 대한 예시이며 기타 추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1) 교육 시 발생하는 식비, 시식비 등은 본사 부담입니다. (본사 및 가맹점 부담 내용 사전 공지)
- 2) 최초 가맹계약 시(개점 전 교육) 시행되는 교육은 교육여건에 따라 가맹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본부에서 주최하는 외부행사,외부교육,해외연수 등은 상황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기간중 가맹점 직원들의 인건비는 가맹점사업자 부담입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가맹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급 평가에 반영됩니다.
- 2) 재계약 진행시 가맹점 평가요소에 반영되며 이수 기준 미달 시 가맹계약서상 중대한 위반사유로 가

맹본부는 가맹점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기일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오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기일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직영점 無. 해당사항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직영점 無. 해당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pos 매출 기준

*직영점 無. 해당사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상생협력실(031-720-989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1>

<물품공급 내역>

아래의 물품 공급 내역에서 강제 품목의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주) 놀부에서는 집기자재, 가맹본부 공급물품과관련하여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첨부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첨부3> 2023, 2022, 2021년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